비공개 대상 판단 기준 (발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을 교육용으로 줄여 쓴 발췌입니다. 문구는 실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계약·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것, 또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은 예외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13조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청구인에게 알린다. 비공개 결정이면 그 이유와 불복 방법을 함께 알린다

법 제14조
공개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이 섞여 있고 나눌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빼고 공개한다

JJ시 정보공개 업무 처리 지침 (발췌)

교육용 가상 지침입니다.

제4조(가림 표시)
가린 곳에는 «비공개 사유 번호»를 적은 표시를 붙인다.

제5조(공무원 표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직무 수행 정보로 보아 가리지 않는다.

제6조(제3자 정보)
업체 등 제3자의 정보가 들어 있으면 공개 전에 해당 업체의 의견을 확인한다.

발췌본입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법령정보 사이트·내부 규정집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